

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대상 경영체	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법인명·대표자명)	
	주소	
제출 증명자료		

변경신청 내용		
기존 등록 내용		변경신청 내용
신 청 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연락처(☎)	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
	주소	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 귀하

유의사항
1. 이 신청서는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·면장·동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인은 필요 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3.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4.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주민등록등본 등)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5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경영체정보는 등록·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.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